미래 창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동작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동작구의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동작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창의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각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① (동작구청):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창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창의교실 구축 컨설팅, 수업혁신 장학,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사 연수 지원, 티처 리더 육성 등

③ (서울교육대학교): 초등학교 미래 창의교육 프로그램, 연수 및 공간 지원

④ (서울대학교): 중·고등학교 미래 창의교육 프로그램, 연수 및 공간 지원

제3조 (책임과 의무)

① 각 기관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은 협력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은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 해지)

①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협약 당사자 간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 협약 당사자 각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의 각 호에 따른 협약 해지의 경우 협약 당사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멸된다.

제5조 (협약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6조 (협약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7조 (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 협약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각 기관은 위와 같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13일

동작구청
구청장 **이 창 우**
이창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 병 관**

서울교육대학교
총 장 **김 경 성**
김 경 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 장 **김 희 백**
김희백